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1313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296원 및 그 중 3,916,875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797,609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김철환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B의 상속지분을 협의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C(주)는 2016. 7. 28. 피고 B에게 금 700만 원을 계약만료인 2018. 11. 23.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7.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C는 2017. 6. 13. 소외 D 주식회사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D(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원고는 이후 피고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

전자방법원 서산지원 당건시법원 2020차전365), 2020. 6. 20.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 은 원고에게 금 9,459,813 원 및 그 중 금 4,630,884원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소의 E 주식회사는 피고 B 에게 2013. 2. 17. 금 5,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금리 연 0%, 연체이자율 연 11.5%로 하여 대여해 주었고(갑 제5호증의 1 신용대출계약사실증명서 참조),

피고 B 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2013. 10. 14.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48개월, 금리 5.9%, 연체이자율 24%인 신차할부 계약을 위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금 26,5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자동차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5호증의 2 신차할부 계약사실증명서 참조).

그런데 피고 B 은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자동차 할부대금을 각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E 주식회사는 2021. 12. 6. 원고에게 피고 B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따라서 피고 B 은 원고에게 금 8,830,296원(7,662,880원 + 1,167,416원)

및 그 중 금 3,916,875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797,609원에 대하여는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7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㉔ 소외 주식회사 F []은 2016. 1. 25. 피고 B []에게 금 7,561,582원을 여신만료일 2020. 1. 21., 이자율은 29.9%, 지연배상금율은 연 29.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8호증 여신거래약정서 참조).

그런데 피고 B []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위 [] F []은 2017. 12. 22. 소외 G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 주식회사, 갑 제12호증의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참조)에게 피고 B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9호증의 1, 2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G []는 2020. 10. 22. 원고에게 피고 B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9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참조)

원고는 이후 피고 B []을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전 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21차전472), 2021. 5. 11. 지급명령이 피고 B []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 B []이 이의하지 않아 같은 해 5. 26.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0호증 지급명령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11,765,949 원 및 그 중 금 4,923,610원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4) 소견

전술하였듯이 원고는 위 (1), (3)항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받았는 바,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2)항의 채권에 대해서만 양수금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1) 내지 (3)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 (30,056,058원)입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 B의 아버지는 I이었는데, 위 I는 2017. 8. 26. 사망하였고, 피고 B은 위 I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I의 상속인들 및 B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7. 10. 18.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12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조파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B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B의 재산인데, B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 B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외부

(1)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B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B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진정한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